

# 審 查 報 告 書

2001. 8. 28  
총무위원회

## 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1. 8. 20
- 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- 다. 回附日字 : 2001. 8. 21
- 라. 上程日字 : 2001. 8. 28

## 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: 崔鎮珩)

### 가. 提案理由

- '90년도 이후 정부의 『고용직공무원 기능직화』 방침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이 없어지는 추세로써,
- 우리시도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변환되어 고용직공무원이 없는 상황임에 따라 본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나. 主要骨子

-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폐지하고자하는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여 왔음.
- 그러나 '90년도 이후 정부의 『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』 방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변환되어 현재 우리시에는 고용직공무원이 없는 상황으로 본 조례는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### 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### 6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223호
의 결 년 월 일	2001. (제 회)

##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1. 8. 20.

#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8. 20.  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폐지이유

- 90년도 이후 정부의 『고용직공무원 기능직화』 방침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이 없어지는 추세로써,
- 우리시도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변환되어 고용직공무원이 없는 상황임에 따라 본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 주요골자

-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.

## 기타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관련법규
  -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
  - 충청남도 조례 제2507호('95. 6. 14)
    -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

서산시 조례 제 호

##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